



# 일본 : 프리랜서 보호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

서성광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인문사회연구과 박사과정)

## ■ 머리말

프리랜서 노동형태는 전통적 고용형태와는 다르지만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법적·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행,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발표, 프리랜서 보호법의 통과,<sup>1)</sup> 그리고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을 통해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적 변화를 탐구하고자 한다.

1) 프리랜서 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수탁 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등 법)」이다. 이 법은 프리랜서법, 프리랜서 신법, 프리랜서 신보호법 등으로 불리며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보호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 ■ 프리랜서 현황 및 노동시장의 문제점

### 프리랜서 현황<sup>2)</sup>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를 “실제 매장이 없고, 피고용인도 없는 자영업주나 1인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을 얻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sup>3)</sup> 일본 정부의 조사<sup>4)</sup>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 내 프리랜서 수는 약 462만 명으로,<sup>5)</sup> 이 중 주업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약 214만 명, 부업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약 248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0대 이상은 약 72%, 연수입 300만 엔 미만은 약 53%이다. 프리랜서 활동을 이어 나가려는 비율은 78.3%, 회사를 희망하는 응답은 3.4%, 불확실한 응답은 17.5%, 기타는 0.7%이다.

### 프리랜서 노동시장의 문제점

동일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중 약 40%가 발주 시 보수와 업무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문제를, 약 30%가 보수의 지급 지연, 미지급, 일방적인 감액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에 대응하여 후생노동성은 2020년부터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무료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리랜서들이 보수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노동환경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sup>6)</sup>

2) 일본 내 프리랜서 중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분석은 박준희(2022), 「일본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쟁점」, 『국제노동브리프』, 20(8), pp.53~62를 참조.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본의 프리랜서에게 미친 영향은 같은 저자의 「2022년 일본 정부의 임금 정책과 노동조합의 요구」, 『국제노동브리프』, 20(2), pp.96~102를 참조.

3) 内閣官房, 公正取引委員会, 中小企業庁, 厚生労働省(2021), 『フリーランスとして安心して働ける環境を整備するためのガイドライン』, 内閣官房, 公正取引委員会, 中小企業庁, 厚生労働省.

4) 内閣官房日本経済再生総合事務局(2020), 「フリーランス実態調査結果」, <https://www.kantei.go.jp/> (2024.1.17).

5)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내 노동자 수는 6,67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総務省統計局(2021), 「労働力調査(基本集計)2020年(令和2年)平均結果の要約」, <https://www.stat.go.jp/> (2024.1.17).

6) 厚生労働省(2023), 「フリーランス・トラブル110番の相談及び和解あっせん件数」, <https://www.mhlw.go.jp/> (2024.1.17).

## ■ 일하는 방식 개혁

2018년 일본 정부는 노동기준법, 노동안전보건법, 노동계약법, 노동자 파견법, 고용정책법, 파트타임 노동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을 제정했다.<sup>7)</sup> 이 법률은 일과 삶의 균형과 장시간 노동 억제,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므로 프리랜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8)</sup> 그러나 노동시간 감축의 구체적 방안이 부재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아닌 기업의 “일 시키는 방식 개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sup>9)</sup>

## ■ 프리랜서 가이드라인<sup>10)</sup>

###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특징

2021년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 가이드라인(이하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프리랜서가 노동자의 지위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업무 위탁자와의 도급 계약 관계를 고려해 독점금지법과 하청대금지급 지연등방지법(이하 하청법)으로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업무 실태를 고려해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 관계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대한 전체 구조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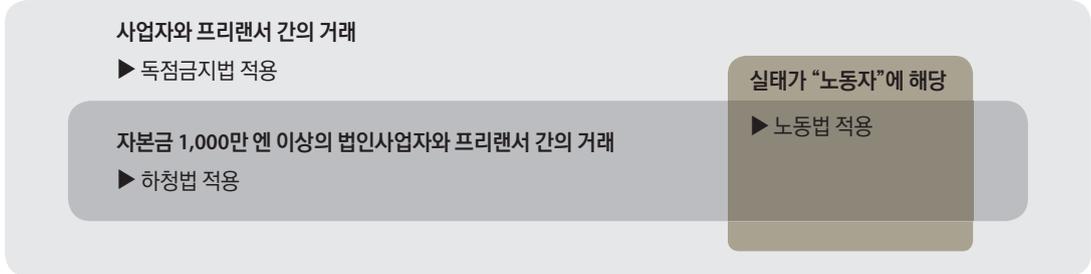
7) 厚生労働省(2018), 『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厚生労働省.

8) 柴田弘捷(2020), 「『働き方改革』とフリーランス的働き方の変容」, 『専修人間科学論集』, 第10号, pp.43~64.

9) 今村幸次郎(2017), 「企業のための『労働のルール破壊』, 『働かせ方改革』」, 『学習の友』, 第772号, pp.30~33.

10) 内閣官房, 公正取引委員会, 中小企業庁, 厚生労働省(2021), 『フリーランスとして安心して働ける環境を整備するためのガイドライン』, 内閣官房, 公正取引委員会, 中小企業庁, 厚生労働省.

[그림 1]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조건



자료: 内閣官房, 公正取引委員会, 中小企業庁, 厚生労働省(2021), 『フリーランスとして安心して働ける環境を整備するためのガイドライン(概要版)』, 内閣官房, 公正取引委員会, 中小企業庁, 厚生労働省.

##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한계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은 프리랜서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독점금지법과 하청법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적절한 거래 조건을 정착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배우나 음식 배달 기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가까운 프리랜서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다양한 프리랜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규칙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1)</sup>

## ■ 프리랜서 보호법

### 프리랜서 보호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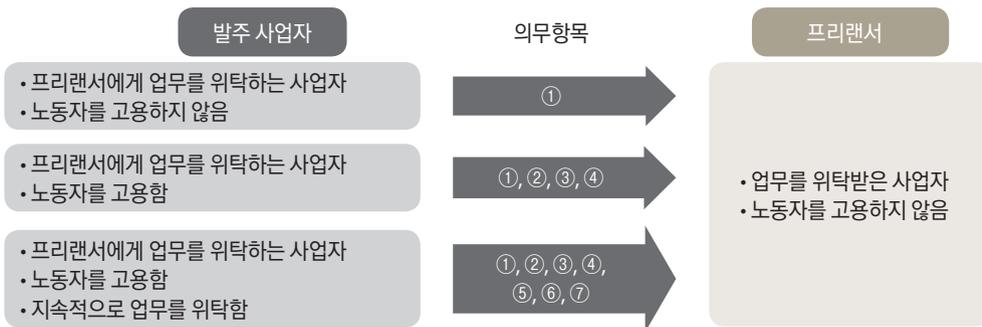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3년에 내각관방,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후생노동성이 협력하여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24년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거래를 적절히 조율하고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11) 日本經濟新聞, 「フリーランスどう保護 政府の指針案、評価割れる」, 2021.2.22.

## 프리랜서 보호법의 내용

프리랜서 보호법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발주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프리랜서에 대한 의무항목이 달라진다. 행정기관은 이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지휘, 권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는 위반 사항을 국가의 행정기관에 신고할 권리를 갖는다.

[그림 2] 프리랜서 보호법의 내용



의무항목	구체적인 내용
① 서면 등을 통한 거래 조건의 명시	업무 위탁 시, 서면 등을 통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보수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보수 지급 기한 설정 및 기한 내 지급	발주한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보수 지급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모집 정보의 정확한 표시	광고 등에 프리랜서 모집 정보를 게재할 때, 거짓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고, 정확한 최신 내용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괴롭힘 대책에 관한 체제 정비	프리랜서에 대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 대응을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⑤ 금지사항	프리랜서에게 지속적인 업무 위탁 시, 법률에서 정하는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주한 물품을 받지 않거나, 발주 시 정한 보수 금액을 추후에 감액하거나, 발주한 물품을 수령 후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⑥ 육아·요양 등과 업무의 병행에 대한 배려	지속적인 업무 위탁 시, 프리랜서가 육아·요양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⑦ 중도 해지 등의 사전 예고	지속적인 업무 위탁을 중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한다.

자료: 内閣官房, 公正取引委員会, 中小企業庁, 厚生労働省(2023), 『フリーランスの取引に関する新しい法律ができました (リーフレット)』, 内閣官房, 公正取引委員会, 中小企業庁, 厚生労働省.

## ■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 산재보험 적용 확대안

후생노동성은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자율 가입을 확대하고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에서 “10시간 이상 노동”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했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는 약 70만 명이지만, 이러한 변경으로 가입 대상자가 약 27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제안은 2024년 정기 국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sup>12)</sup>

### 보험료를 계산 방법

현재 프리랜서의 산재보험료는 하루 임금에 365일을 곱한 뒤 0.3%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을 2만 엔으로 신고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2만 1,900엔이 된다. 새로운 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sup>13)</sup>

## ■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프리랜서 가이드라인, 프리랜서 보호법, 그리고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의 정책적 변화를 살펴봤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 이후, 노동기준감독서는 출근 중 사고를 당한 프리랜서 촬영 기사와<sup>14)</sup> 배송 중 부상을 당한 아마존 배송 기사의 산재를 인정했다. 아마존 배송 기사에 대한 산재 인정은 일본에서 처음 있었던 일로,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sup>15)</sup>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 정책은 한

12) 毎日新聞, 「雇用保険の加入要件「週10時間以上」に拡大へ 2028年度から」, 2023.12.11.

13) 日本経済新聞, 「全フリーランス向け労災保険、料率は0.3% 厚労省案」, 2023.11.20.

14) 朝日新聞, 「フリーカメラマンの通勤事故、「労災」と認定 偽装フリーランス問題」, 2023.11.14.

15) 朝日新聞, 「アマゾン配達員に労災認定 フリーランスでも雇用された労働者と判断」,

국이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LI**

2023.10.4.